

발 간 등 록 번 호

기계설비 관계 법령집

2023. 1.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기계설비법
2. 기계설비법 시행령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 - 201 - 4585, 35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2020. 6. 9.>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9.>

③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협조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제12조(세제·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및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0. 5. 19.>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5. 19.>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신설 2020. 5. 1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

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0. 5. 1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5. 19.>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 5. 1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 5. 19.>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5. 19.>

-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7장 보칙

제23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5. 19.>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19.>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5599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7호,2020.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3호,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 - 201 - 4585, 35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삭제 <2021. 2. 2.>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현황
 4.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5.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6.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8.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현황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공공기관등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관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기계설비산업 연구·개발 협약의 체결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추는 것

4.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 2. 2.>

-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
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
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
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
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
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같은 항 단서
에 따라 감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 기
계설비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격한 검사 결과가 제출된 기계설비 부분에 대
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해당 신청인에
게 발급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해야 한
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

제16조(유지관리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교육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기술인력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등록말소 연월일
2. 상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말소 사유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7장 보칙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1. 2. 2.]

제8장 벌칙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칙 <제30619호, 2020.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 중 제14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 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

제5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31427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공사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

구분	내용
1.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2.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4.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6.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7.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8. 덕트(duct)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9.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10. 방음·방진·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11.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생산·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12. 특수설비	가. 건축물등에서 냉동·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2. 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급	기술·기능 분야
1)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 설비·용접·소음진동
2)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판금제관·용접
3)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 보전·메카트로닉스·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신재 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정밀측정·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판금제관·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5) 기능사	온수온돌·배관·전산응용기계제도·정밀측정·공조냉동 기계·설비보전·생산자동화·판금제관·용접·특수용접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
 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라.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별표 6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
 과정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를 이수하거나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교육시설	가.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실습장 하나 이상
2. 인력	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 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제11조 관련)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 제18호에 따른 참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 1) 실무경력: 30점 이내
-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10년 이상	
		다) 기사	10년 이상	
		라) 산업기사	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2) 고급	가)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7년 이상	
		다) 산업기사	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 계설비유지관리자
	3) 중급	가) 기능장	4년 이상	
		나) 기사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 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 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 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6]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

1.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가. 신규교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 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 지관리자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 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2. 교육과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I

- 1) 기계설비 일반
- 2) 기계설비 운영계획
- 3)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 4) 기계설비 관련 법령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II

-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 2)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 3)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4) 자동제어설비
- 5) 그 밖의 설비

3. 그 밖의 사항

가.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
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 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너. 이산화탄소(CO₂) 측정기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훈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위 표 제3호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8]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 마목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4분의 1씩을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등록취소		
다.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등록취소		
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2조 제2항제4호	등록취소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6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9] 삭제 <2021. 2.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다목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을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사.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4호	30 50 70 100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5호	50	70	100
차.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6호	30 50 70 100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카.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법 제30조	50	70	100

제출한 경우	제2항제7호			
--------	--------	--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 - 201 - 4585, 35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이 끝난 날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25.>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3. 졸업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2. 2.]

-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 ④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2. 2.>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발급(전자문서로 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2. 2.>

③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하며, 다시 찾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신설 2021. 2. 2.>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 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2. 2.>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 신고)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

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 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월 15일

2. 개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월 31일

3.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

[본조신설 2021. 2. 2.]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성능점검능력은 피상속인 및 종전 법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다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성능점검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인 회사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성능점검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2월 15일까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새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⑥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시해야 하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영업소 소재지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5. 성능점검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6. 보유기술인력

②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성능점검능력평가액(그 산정항목이 되는 점검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

제7장 보칙 <신설 2021. 2. 2.>

제18조(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

부칙 <제717호, 2020.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2022. 2. 2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3년 4월 17일
4.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4년 4월 17일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게 해당 통보의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21. 2. 2.]

부칙 <제819호, 2021.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호, 2022.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기준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1. 영 제1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 영 제1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3. 영 제1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은 제외한다)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	

해당하는 건축물 은 제외한다)	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 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 지관리자
---------------------	--------------------------------------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결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1. 2.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대적인 성능점검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성능점검능력평가액} = \text{점검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 중 점검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성능점검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의 총액으로 하고,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성능점검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영평가액} = \text{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 1) 위의 산식 중 자본금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만,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성능점검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자본금이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영평점} = (\text{유동비율평점} + \text{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률평점}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4$$

가) 위의 산식 중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업체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은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 3)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인 법인의 최저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인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점검실적평가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성능점검업자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수)} \times 30/100$$

-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을 말한다)의 3배와 점검실적평가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의 산식 중 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의 총점검실적액을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보유기술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가중치	1.7	1.5	1.3	1	0.7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부터 5)까지의 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는 $\pm 30/100$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ext{신인도평가액} = \text{점검실적평가액} \times \text{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

- 1)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더한다.

영위기간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30년이상
비율	1/100	3/100	5/100	7/100

- 2) 평가연도의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는 100분의 1을 뺀다.

- 4)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성능점검업자는 100분의 5를 뺀다.
 -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성능점검능력평가 시 100분의 30을 뺀다.
2. 제1호가목의 점검실적평가액 중 성능점검실적을 산정할 때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상속인,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종전 법인 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합산한다.
 3. 제1호나목의 경영평가액 중 경영평점을 산정할 때 법 제21조에 따라 새로 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한 성능점검업자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양수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경영평점은 1로 한다.
 4. 제1호라목의 신인도평가액 중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며, 그 밖의 지위승계자는 그렇지 않다.
 5. 그 밖에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1. 2. 2.>

수수료 및 교육비(제18조 관련)

1. 수수료 및 교육비 금액

납부자	금액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없 음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천원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1) 신규교육을 받는 자	15만5천원
2) 보수교육을 받는 자	15만5천원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4만원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없 음
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2만원

2.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기준

가.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의 전부

나. 교육 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다. 교육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라.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마.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교육훈련	소재지			
	내용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심사	결재	공고 및 회신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번호 제 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 명칭:
2. 대 표 자:
3. 교육훈련 소재지:
4. 교육훈련 내용:

「기계설비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제 호

교육수료증

1. 성 명:
2. 생년월일:
3. 소 속:
4. 교육과정:
5. 교육종류:
6. 교육기간: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기계설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

직인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공사 현장 명칭				
공사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기계설비 설계자	상호	기계설비 설계 관련 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영업소 소재지	도급 계약일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	공사업 등록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영업소 소재지	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영업소 소재지	현장배치 기계설비감리인		
	도급 계약일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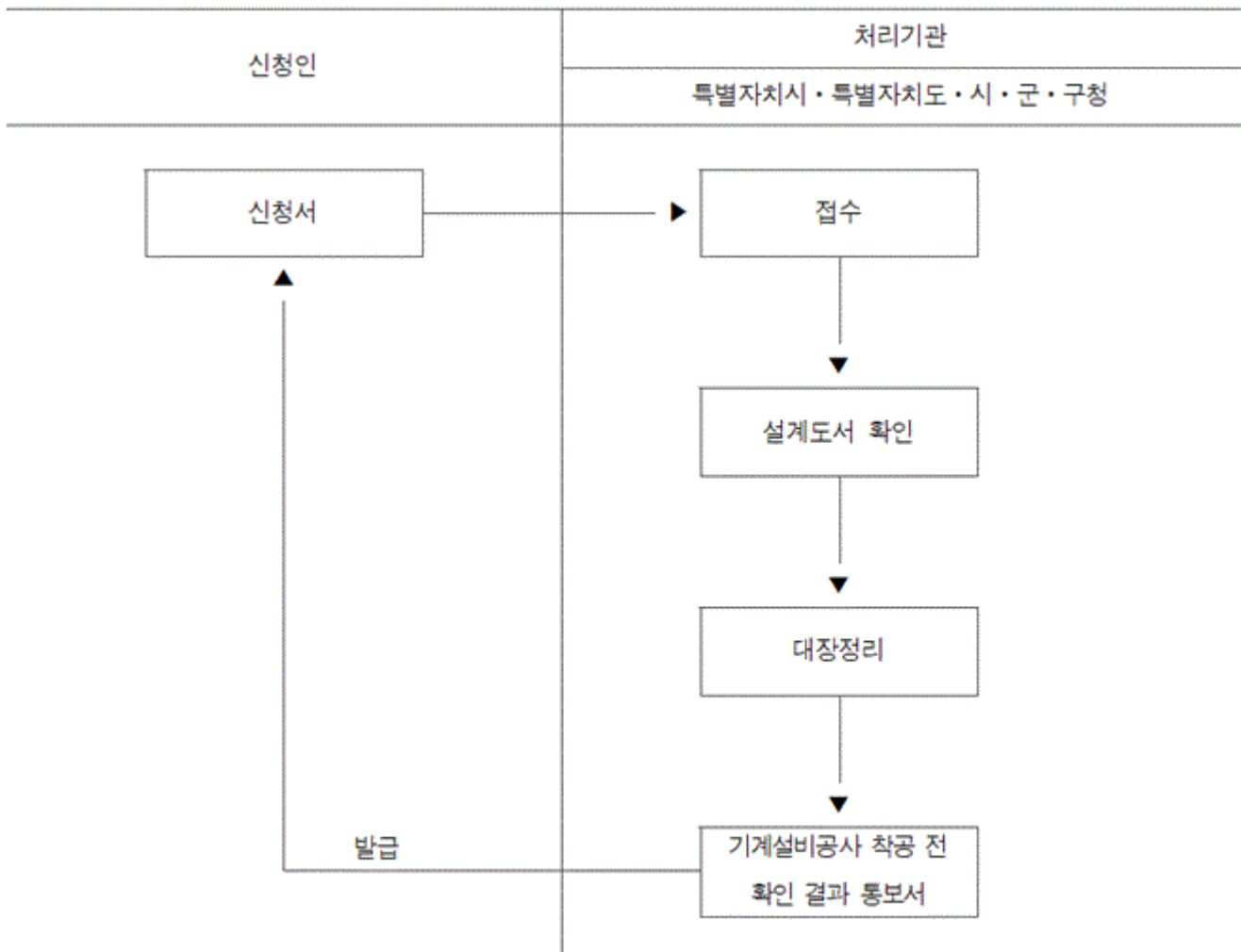
작성 방법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

신 청 인 (건축주)		전 화 번 호	
주 소			
기계설비설계자		전 화 번 호	
주 소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검토의견			
보완사항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기계설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직인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인 (건축주)		기계설비설계자		건축현장						처리								비 고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성명 (기관 또는 법 인 명 칭)	대표자	상호	기계설비 설계 관련 등록번호	현장명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규모 (층수)	접 수 일	검 토 자	검토 의견	통보서 발급 번호	통 보 일	접 수 일	검사 확인증 발급일	검사 확인증 번호	

※ 검토의견: 적합, 부적합(보완 필요) 작성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	공사업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현장 배치 기계설비감리인		
건축허가 번호	검사 현장 명칭			
	검사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__층, 지상__층	
착공일	.	완공일	.	
검사 희망 연월일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 13조제 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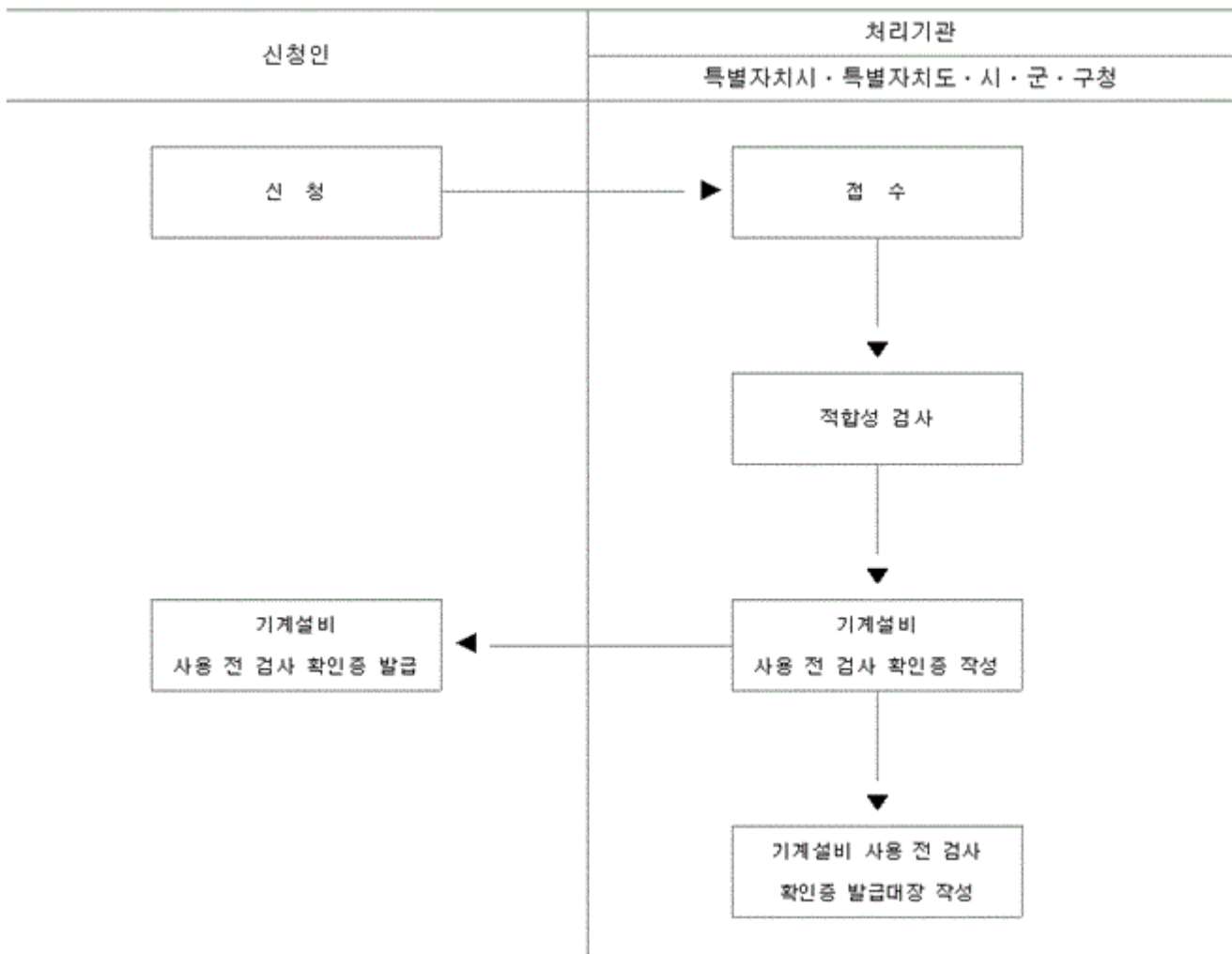
작성 방법

1. 연면적은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	공사업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 결과	건축허가번호	검사 현장 명칭
		검사 현장 주소
	검사 연월일	
	검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판정	

「기계설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직인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	
	공동주택	세대수 ()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		용도 ()	
	주소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선임일		수첩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수첩발급번호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선임일		수첩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위쪽)

신고인 제출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		
	공동주택	세대수 ()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	용도 ()		
	주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책임 [] 보조	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연면적()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용도()
	주소		
신청사유		신청부수	

「기계설비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수수료: 5 천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신설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번호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	
	공동주택	세대수 ()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		용도 ()	
	주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책임/보조	등급	선임일

「기계설비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직인

[illegible]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7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2.5cm×3cm)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현 근무처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계설비관련 기술자격사항	종목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기계설비관련 최종학력사항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학교명		
기 술 경 력 사 항							
연번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직 위	담당업무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뒤쪽)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3. 졸업증명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1매
담당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신고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및 학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 및 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학교,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이용 목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학력, 자격조회 - 제공 항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경력, 학력, 자격 - 제공기관 보유·이용 기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심사완료)시까지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수집된 정보의 보유기간: 동의한 날로부터 3년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사항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 중 신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적습니다.
3. 기계설비 관련 최종학력사항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위 및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또는 학과의 이수·졸업 사항을 적습니다.
4. 경력사항란 중 담당업무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설계, 63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를 적습니다.
5. 신고인 제출서류 중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8서식] <신설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수첩발급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현근무처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사항	기술 자격	종목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최종 학력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학교명	
	기술 경력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직 위	담당업무
		~					
		~					
		~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자 확인사항	국가기술 자격취득사항확인서

(뒤쪽)

신청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및 학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 및 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학교,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 - 이용 목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학력, 자격조회 - 제공 항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경력, 학력, 자격 - 제공기관 보유·이용 기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인정(심사완료)시까지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동의서	동의 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수집된 정보의 보유기간: 동의한 날로부터 3년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사항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 중 신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적습니다.
3. 기계설비 관련 최종학력사항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위 및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또는 학과의 이수·졸업 사항을 적습니다.
4. 기술경력사항란 중 담당업무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를 적습니다.
5. 신고인 제출서류 중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9서식] <신설 2021. 2. 2.>

표지 앞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130mm × 80mm [백상지 (150g/m²)]

표지 뒤쪽

(1 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 급 번 호 : _____
 등 급 : _____
 성 명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주 소 : _____
 발 급 일 : _____

사진

(가로 2.5cm×세로 3cm)

위 사람은 「기계설비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임을 확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합니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직인

130mm × 80mm [백상지 (150g/㎡)]

(2 쪽)

기술자격

종 목 및 등 급	등 록 번 호	합 격 연 월 일	발 급 기 관

130mm × 80mm [백상지 (150g/㎡)]

(3 쪽)

학 력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학교명

130mm×80mm[백상지(150g/m²)]

(4 쪽)

기술경력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환 산 경 력	경 력 누 계

130mm×80mm[백상지(150g/m²)]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10서식] <신설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급번호					
수첩 발급번호		등급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최종 학력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학교명	
기술 경력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처명	담당업무	환산경력	경력누계
	~				
	~				
	~				
	~				
	~				
	~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직인

발급번호:

성명:

(제2쪽 / 총 쪽)

기술경력

연번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처명	담당업무	환산경력	경력누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11서식] <신설 2021. 2.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제 1 쪽 / 총 쪽)

[illegible]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2. 2.>

유지관리교육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소속 회사	선임 현장 소재지 및 선임일	
신청내용	교육 구분 [] 신규교육 [] 보수교육		
	선임 구분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비: 15만5천원
------	----	--

제 호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1. 교육과정: [] 신규교육 [] 보수교육
2. 선임 구분: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3. 성 명:
4. 생년월일:
5. 수 료 일:

위 사람은 「기계설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의 장 인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2. 2.>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육과정 (신규/보수)	선임 구분 (책임/보조)	수료일	소속 회사	선임 현장 소재지

297mm×210mm[백상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변경등록	25일 5일
------	-----	------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기술인력	명	장비	따로 불임

변경등록 신고사항

☐ 상호 변경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기술인력 변경 ☐ 대표자 변경

일정

변경내용	구 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본·변경등본을 신청합니다.

15. 100 100 100

신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출발서류	원본 참조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4만원(신규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제출 구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등록	변경등록	
첨부 서류	[제출서류(제3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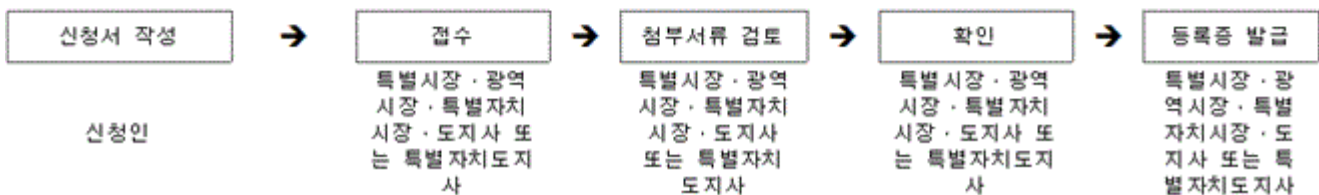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illegible]

위와 같이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5. 16. 17.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

등록번호 제 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성명(대표자):
4. 등 록 일: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130mm × 80mm [백상지 (150g/㎡)]

(제1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 표 자	
등 록 번 호	제 호	등 록 일	
영업소 소재지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30mm × 80mm [백상지 (150g/㎡)]

(제2쪽)

변 경 사 항			
변 경 연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확 인
비 고			

130mm×80mm[백상지(150g/m²)]

(제3쪽)

성 능 점 검 능 력 평 가 액			
연 도	금 액 (천원)	기 록 일	기 록 자 (서명 또는 인)

130mm×80mm[백상지(150g/m²)]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

[illegible]

(뒤쪽)

[illegible]210mm × 297mm [백상지(150g/m²)]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종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사유			

「기계설비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심사	→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	----	---	----	---	----	---	---------

신청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담당 부서)

(제1쪽 / 총 쪽)

[illegible]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휴업 신고서
[] 폐업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연월일 년 월 일						
	신고 사유						

「기계설비법」 제21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150 151 152

신교인: (서명)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계정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 비밀번호, 계좌이체금, 계좌이체일, 계좌이체금액, 계좌이체처
확인 인사할 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 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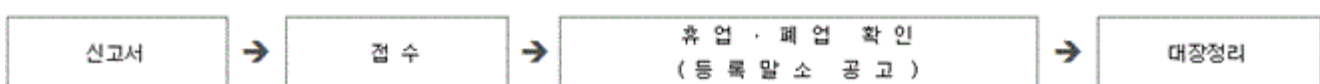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교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담당부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 [] 상속 신고서
[] 양수
[] 합병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림)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승계인)	승계일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계설비법」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0.0	0.5	1.0
-----	-----	-----

신고인 (승계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2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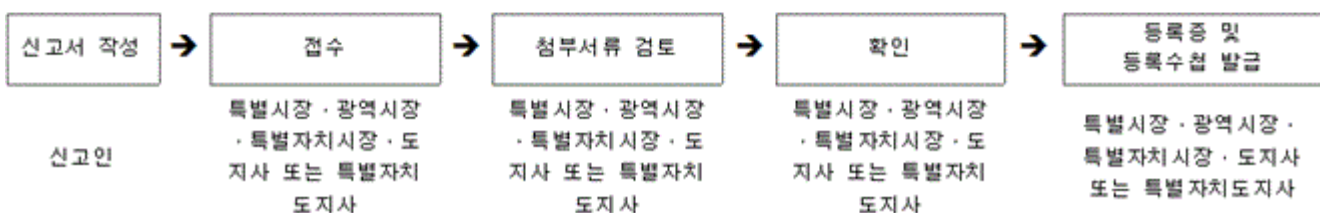
유의사항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승계일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계시일, 양수인의 경우 영업 양도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을 말합니다.
2. 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3. 피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법인을 말하며 합병되는 법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는 신청연도를 기재합니다.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에 따른 세무대리업 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1. 2. 2.>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계설비성능점검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점검명		
현장 소재지(번지까지 기재)		
계약 연월일	점검 시작일	점검 종료일
총 계약금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계약방법	도급종류	

위와 같이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 상호(명칭)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 8. 9.] [고시 제2021 - 1013호, 2021. 8. 9.,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044 - 201 - 458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성능점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점검업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계설비 유지관리 일반사항)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1.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
2.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6조(유지관리지침서)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한다)
2.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다)
3.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
4. 기계설비 성능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호서식)
5. 기계설비 안전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호서식)
6.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이하 "점검대상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2.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3.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2.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3.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③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주체가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 - 1013호, 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제2호의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별표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제7조제1항 관련)

기계설비의 종류	세부항목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냉각탑
	축열조
	보일러
	열교환기
	팽창탱크
	펌프(냉·난방)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2.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닛
3. 환기설비	환기설비
	필터
4.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5.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고·저수조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배관
	통기배관
	우수배관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8. 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9. 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10. 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11.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12. 방음·방진·내진 설비	방음설비
	방진설비
	내진설비

[별표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평창탱크	전체 수량	냉·난방, 급탕 평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패키지에어컨	전체수량의 20% 이상	
	항온항습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	1개 총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수량의 20% 이상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식	
급수·급탕 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 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점검항목	세부 검토사항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3. 에너지사용량 검토	1)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1) 관리주체가 제12조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

[별표 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직접인건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 인 인				
2) 직접경비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	식 식 식				
3) 제경비 (1의 110~120%)	식				
4) 기술료 ((1+2)의 20~40%)	식				
5) 부가가치세 ((1+2+3+4)의 10%)	식				
합 계					
비고					
1.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조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2.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가. 직접인건비 : [표 1]에 따른 투입인원과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점검 수량에 [표 2]에 따른 조정계수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계획 검토와 시스템 검토는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작성한다.

나.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제경비 : 당해 업무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 한도 내에서 정한다.

라. 기술료 : 당해 업무를 위해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료 및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한도 내에서 정한다.

표 1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

구분	점검대상	기준인원(인)			분류	조정 계수 적용여부	
		특급	고급	중급		연면적 또는 세대수	경과년수
계획 검토		3.58	-	-	식	✓	
시스템 검토		3.58	-	-	식	✓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냉동기	0.13	0.28	0.16	대		✓
	냉각탑	0.10	0.25	0.17	대		✓
	축열조	0.10	0.27	0.17	대		✓
	보일러	0.10	0.28	0.19	대		✓
	열교환기	0.04	0.16	0.11	대		✓
	평창탱크	0.02	0.16	0.07	대		✓
	펌프	0.10	0.21	0.13	대		✓
	신재생에너지	0.09	0.23	0.09	대		✓
	패키지에어컨	0.04	0.11	0.17	대		✓
	항온항습기	0.08	0.16	0.18	대		✓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0.04	0.18	0.11	대		✓
	팬코일유닛	0.04	0.11	0.13	대		✓
환기 설비	환기설비	0.04	0.11	0.13	대		✓
	필터	0.04	0.10	0.10	대		✓
위생기구설비		0.04	0.35	0.20	식	✓	
급수·급탕 설비	급수·급탕설비	0.04	0.23	0.10	식	✓	
	고·저수조	0.04	0.21	0.13	식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0.04	0.29	0.17	식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0.04	0.29	0.17	식	✓	
	물 재이용설비	0.04	0.29	0.17	식	✓	
배관설비		0.04	1.13	1.25	식	✓	
덕트설비		0.04	0.52	0.40	식	✓	
보온설비		0.04	0.96	1.00	식	✓	
자동제어설비		0.10	0.75	0.50	식	✓	
방음·방진·내진 설비		0.04	0.47	0.42	식	✓	
보고서 작성		0.42	2.46	2.71	식	✓	

표 2 연면적, 세대수,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계수

연면적에 따른 조정		세대수(공동주택)에 따른 조정		기계설비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연면적(㎡)	조정 계수	세대수	조정 계수	경과년수	조정 계수
10,000 ~ 15,000	1.00	300세대 ~ 50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00	5년 이내	1.00
15,000 ~ 30,000	1.10	500세대 ~ 1,000세대	1.10	5년 초과 10년 이내	1.05
30,000 ~ 60,000	1.40	1,000세대 ~ 2,000세대	1.20	10년 초과 15년 이내	1.09
60,000 ~ 100,000	1.80	2,000세대 ~ 3,000세대	1.30	15년 초과 20년 이내	1.14
100,000 ~	2.00	3,000세대 ~	1.40	20년 초과 25년 이내	1.18
				25년 초과	1.20

(1 番)

상호(명칭)		현장주소					
구분	대상설비	대상	비고	구분	대상설비	대상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일반)	[]		열원 및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지열·태양열·연료전지)	[]	
	냉동기(흡수식)	[]			항온항습기	[]	
	흡수식 냉온수기	[]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일반)	[]	
	공랭식 냉동기	[]			공기조화기(패키지)	[]	
	냉각탑	[]		환기설비	송풍기	[]	
	축열조	[]			필터	[]	
	보일러	[]		급수급탕설비	고·저수조	[]	
	열교환기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	
	팽창탱크	[]			물 재이용설비	[]	
	펌프(냉·난방)	[]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	

점검자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m²]

냉동기(일반) 현황표

(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냉동능력(kW/USRT)		/			
전류/전압(A/V)		/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압 축 기	기 동 방 식	-			
	출력 x 대수	kW			
	윤활유(충전량)	level			
증 발 기	냉수(브라인) 입 · 출구온도	℃	/		
	냉수(브라인) 입 · 출구압력	MPa	/		
	냉수(브라인) 순환량	L / s			
응 축 기	냉각수 입 · 출구온도	℃			
	냉각수 입 · 출구압력	MPa	/		
	냉각수 순환량	L / s			
냉 매	증 류	-			
	안전밸브 설정 압력	MPa			
소음		dB			
보호 장치		-	고 · 저압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동결 방지용 온도 조절기, 토출가스 온도, 제한방지 스위치, 역상 방지기, 압축기 보호장치 등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냉동기(흡수식) 현황표

(3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냉동능력 (kW/USRT)		/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재 생 기	공급압력/회수온도	MPa / °C	/		
	냉수 입 · 출구온도	°C	/		
증 발 기	냉수 입 · 출구압력	MPa	/		
	냉수 순환량	L / s			
	냉각수 입 · 출구온도	°C	/		
응 축 기	냉각수 입 · 출구압력	MPa	/		
	냉각수 순환량	L / s			
	중온수 입 · 출구온도	°C	/		
중 온 수 (재 생 기)	중온수 입 · 출구압력	MPa	/		
	보호 장치	-	고온재생기 온도 고 이상, 고온재생기 액면 저 이상, 냉수 펌프 인터록, 냉수 온도 저 이상, 냉각수 펌프 인터록 이상, 냉각수 유량 부족, 용액펌프 과열이상, 불응축가스, 정전 등		
작 성 방 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흡수식 냉온수기 현황표

(4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버너 형식					
냉난방능력 (kW/USRT)		/			
연료소비율 / 연료종류		/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재 생 기	온 도	℃			
	압 력	MPa			
증 발 기	냉수 입 · 출구온도	℃	/		
	냉수 입 · 출구압력	MPa	/		
	냉수 순환량	L / s			
응 축 기	냉각수 입 · 출구온도	℃	/		
	냉각수 입 · 출구압력	MPa	/		
	냉각수 순환량	L / s			
연 료	소비량	kg/h, Nm³/h			
배 기 가 스	온 도	℃			
	연소효율	%			
보호 장치		-	고온재생기 온도 고 이상, 고온재생기 액면 저 이상, 냉온수 펌프 인터록, 냉수 온도 저 이상, 냉각수 펌프 인터록 이상, 냉각수 유량 부족, 용액펌프 과열이상, 착화실패, 불응축가스, 정전 등		
작 성 방 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

공랭식 냉동기 현황표

(5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냉동능력 (kW/USRT)		/			
전류/전압 (A/V)		/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압 축 기	흡입 압력 / 온도	MPa / °C	/		
	토출 압력 / 온도	MPa / °C	/		
	오일 압력 / 온도	MPa / °C	/		
	압축기 동력	kW			
증 발 기	증발기 압력 / 온도	MPa / °C	/		
	입 · 출구 냉수 압력	MPa	/		
	입 · 출구 냉수 온도	°C	/		
응 축 기	응축기 압력 / 온도	MPa / °C	/		
	입 · 출구 가스 압력	MPa	/		
	입구 가스 온도	°C			
냉 동 기	저압 차단 설정 장치	MPa			
	고압 차단 설정 장치	MPa			
	소 음	dB			
	안전밸브 설정 압력	MPa			
보호 장치		-	고 · 저압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동결 방지용 온도 조절기, 토출가스 온도, 제한방지스위치, 역상방지기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냉각탑 현황표

(6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형 식					
송풍기 기동방식					
용 량 (kW/USRT)	/				
전류/전압 (A/V)	/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송풍기 출력 × 대수	kW				
송풍기 회전수	rpm				
냉각수 입구온도	℃				
냉각수 출구온도	℃				
냉각수 유량	L / s				
보호 장치	-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동결 방지용 온도조절기 등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축열조 현황표

(7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형 식					
외형(길이 × 너비 × 높이)					
축열 용량(kW)					
난방용 보조 열원(kW/h)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1 차 측	입 · 출구 온도	℃	/		
	입 · 출구 압력	MPa	/		
2 차 측	입 · 출구 온도	℃	/		
	입 · 출구 압력	MPa	/		
안전밸브 설정 압력		MPa			
보호 장치			수위조절기, 압력계, 온도계, 안전밸브, 삼방밸브 등		
작 성 방 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보일러 현황표

(8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보일러 능력(kW)					
버너제작사 / 점화방식		/			
연료의 종류 / 버너 용량		/			
최고사용압력(MPa)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송풍기	기동 방식	-			
	출 력	kW			
	회전수 / 풍량	rpm / L/s	/		
보급수 펌프	유 량	L / s			
	온 도	℃			
	토출 압력	MPa			
연료	가스(오일)	Nm³/h			
	공급 압력	Pa			
배기 가스	온 도	℃			
	연소 효율	%			
온수 보일러	온수 입·출구 온도	℃	/		
	고연소 설정 온도	℃			
	저연소 설정 온도	℃			
증기 보일러	사용 압력	MPa			
	안전밸브 설정 압력	MPa			
	고연소 설정 압력	MPa			
	저연소 설정 압력	MPa			
	최대 설정 압력	MPa			
보호 장치			고·저압력 스위치, 고·저수위 스위치, 연소상태 감시, 안전밸브, 저수위 경보장치,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 화염 검출기 등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열교환기 현황표

(9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 조 회 사					
모 델 번 호					
형 식 번 호					
용 도					
열교환량(kW)					
항 목		단 위	설 계 값	비 고	
1차측	입 · 출 구 온 도	℃	/		
	입 · 출 구 압 력	MPa	/		
2차측	입 · 출 구 온 도	℃	/		
	입 · 출 구 압 력	MPa	/		
안전밸브 설정 압력		MPa			
보호 장치			온도계, 안전밸브 등		
작 성 방 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팽창탱크 현황표

(10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형식 번호					
용 도					
외 형 (길이 x 폭 x 높이, mm)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최고 사용 압력	MPa				
탱크 용량	ℓ				
안전밸브 설정 압력	MPa				
감압밸브 1, 2차 압력	MPa	/			
보호 장치		안전밸브 등			
작 성 방 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펌프(냉·난방, 급수) 현황표

(11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형식 번호					
용 도					
용량제어방식		[] 대수 제어 [] 회전수 제어			
항 목	단 위	설 계 값	비 고		
양 정	kPa				
유 량	L / s				
동 력	kW				
회전수	rpm				
전 압	V	/ /			
정격전류(3상)	A	/ /			
보호 장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등			
작 성 방 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재생에너지시스템(지열) 현황표

(1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모델명		/			
형식 종류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열에너지 총부하량		kW			
냉방 능력		kW			
난방 능력		kW			
급탕 능력		kW			
시스템 효율		COP	/		
열펌프		kW / A	/		
천공홀	깊이	m			
	직경	mm			
지중순환열매체	종류				
	혼합비율	%			
그라우팅	종류		/		
	혼합비율				
기타			히트펌프, 순환펌프, 제어장치, 부동액 등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재생에너지시스템(태양열)현황표

(13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모델명		/			
형식 종류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열에너지 총부하량		kW			
냉방 능력		kW			
난방 능력		kW			
급탕 능력		kW			
시스템 효율		COP	/		
열교환기		kW	/		
집열부	형식				
	용량	KW			
열매체부(부동액)	종류				
	희석농도	%			
열교환부(순환펌프)	종류	형식	/		
	펌프용량	KW			
기타			축열조, 제어장치, 배관 등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재생에너지시스템(연료전지)현황표

(14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모델명		/			
형식 종류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열에너지 총부하량		kW			
냉방 능력		kW			
난방 능력		kW			
급탕 능력		kW			
시스템 효율		COP	/		
열교환기		kW	/		
연료전지시스템	형식				
	용량	KW			
사용연료	종류				
	소비량	Nm ³ /hr			
열교환부(순환펌프)	종류	형식	/		
	펌프용량	KW			
기타			축열조, 제어장치, 환기시설 등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항온항습기 현황표

(15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모델명		/			
냉매 종류					
가습 방식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냉방 능력		kW			
난방 능력		kW			
가습 능력		kg/h			
법적 냉동톤		RT			
압축기동력 / 전류		kW / A	/		
송풍기 소요동력 / 전류		kW / A	/		
최고사용압력	고압	MPa			
	저압	MPa			
내압시험압력	고압	MPa			
	저압	MPa			
실내기 풍량 / 동력		L/s / kW	/		
가습량		kg/h			
보호 장치			고·저압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동결 방지용 온도 조절기, 역상 방지기, 압축기 등		

작 성 방 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공기조화기(일반) 현황표

(16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전류/전압(A/V)		/ /			
풍량제어방식		[] 정풍량 [] 회전수 제어			
가습 방식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송풍기 동력		kW			
정 압		MPa			
송풍기 회전수(급기/회기)		rpm	/		
송풍기 풍량(급기/회기)		m ³ /h	/		
열교환기(코일) 능력(가열/냉각)		kW	/		
냉 · 온 수 코 일	냉온수 온도	입 구		℃	
		출 구		℃	
	공기 온도	입구	온도	℃	
			습도	%	
		출구	온도	℃	
			습도	%	
	가습량		kg/h		
	보호 장치			이상 전류 및 전압 차단장치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공기조화기(패키지) 현황표

(17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압축기 기동방식					
사용냉매/냉매 충전량		/			
냉동능력(kW/USRT)		/			
가열코일 종류/가열능력(kW)		/			
풍량제어방식		[] 정풍량 [] 회전수 제어			
가습 방식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압 축 기	흡입 압력/온도	MPa/℃	/		
	토출 압력/온도	MPa/℃	/		
	오일 압력/온도	MPa/℃	/		
	오일 히터 전류	A			
	저압 차단 설정값	MPa			
	고압 차단 설정값	MPa			
	압축기 동력	kW			
	전압/전류(3상)	V / A	/		
증 발 기	입구공기온도	℃	/		
	출구공기온도	℃	/		
	송풍기 모터 동력	kW			
응 축 기	응축기 압력/온도	MPa/℃	/		
	입·출구 가스 압력	MPa	/		
	입·출구 가스 온도	℃	/		
	송풍기 모터 동력	kW			
가습량		kg/h			
보호 장치		-	고·저압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동결 방지용 온도 조절기, 토출가스 온도, 제한방지 스위치, 역상 방지기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송풍기 현황표

(18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형 식					
용 도					
풍량제어방식	[] 정풍량 [] 회전수 제어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풍 량	L / s				
회전수	rpm				
모터 전압(3상)	V	/ /			
모터 전류(3상)	A	/ /			
보호 장치	이상 전류 및 전압 차단장치				
작 성 방 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교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필터 현황표

(19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용 도					
프리필터(Pre filter) 가로X세로X두께 (mm)					
미디움필터(Medium filter) 가로X세로X두께 (mm)					
헤파필터(HEPA filter) 가로X세로X두께 (mm)					
전기집진필터(Electric filter) 가로X세로X두께 (mm)					
환기 종류					
항 목	단 위	설계값	비 고		
풍 량	m ³ /h				
필터 전후 차압	Pa(mmAq)				
소 음	dB				
보호 장치					

작성 방법

1. 설계값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값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비의 명판값으로 할 수 있다.
2. 설계값이 변경될 경우 비고에 기록하고, 필요 시 현황표를 갱신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고·저수조 현황표

(20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용 량(TON)		
규 격 (가로 × 폭 × 높이, mm)		
물탱크 종류(재질)		
정수위 밸브		
안전장치	☐ 안전사다리, ☐ 안전난간, ☐ 잠금장치, ☐ 누수감지경보장치, ☐ 내진장치	
수위 제어	☐ 플로트스위치, ☐ 레벨 스위치, ☐ 전극봉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m²]

오수정화설비 현황표

(21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형 식		
처리 용량 (TON/day)		
설치 일자		
안전장치	[]안전사다리, []안전난간, []잠금장치, []누수감지경보장치	
수위 제어	[]플로트스위치, []레벨 스위치, []전극봉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물 재이용설비 현황표

(2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형 식		
처리 용량(TON/day)		
설치 일자		
안전장치	[]안전사다리, []안전난간, []잠금장치, []누수감지경보장치	
수위 제어	[]플로트스위치, []레벨 스위치, []전극봉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자동제어 시스템 현황표

(23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제조 회사					
모델 번호					
중앙관제장치					
전압/전류(V/A)		/			
조작 장치	형 식				
	표시부				
	조작부				
	기록 장치				
	출력 장치				
신호 처리 장치	형 식				
	관제점				
	검출부				
	조절부				
	메모리				
원격제어장치					
DDC	입출력 단말기				
중앙관제장치 OS 및 설치프로그램 설치년도					

210mm×297mm [백상지 80g/m²]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1 等)

상호(명칭)		현장주소					
구분	대상설비	대상	점검 결과	구분	대상설비	대상	점검 결과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		환기설비	환기설비	[]	
	냉각탑	[]			필터	[]	
	축열조	[]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	
	보일러	[]		급수급탕설비	급수·급탕설비	[]	
	열교환기	[]			고·저수조	[]	
	팽창탱크	[]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펌프(냉·난방)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	
	신재생(지열)	[]			물 재이용설비	[]	
	신재생(태양열)	[]		배관설비	배관설비	[]	
	신재생(연료전지)	[]		덕트설비	덕트설비	[]	
	패키지 에어컨	[]		보온설비	보온설비	[]	
	항온항습기	[]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	
	공기조화기	[]			장치별 관제점검	[]	
공기조화 설비	팬코일 유닛	[]		방음·방진·내진	방음·방진·내진설비	[]	

점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점검자 : (서명)

작성 방법

1. 해당 건축물등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점검대상 기계설비 및 점검표를 추가할 수 있다.
2. []에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해당하지는 경우 v 표시를 한다.
3. 점검결과에는 [적합 o,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냉동기 유지관리 점검표

(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온도 및 압력계 상태						
	-윤활유 이상 유무 상태						
	-보온, 보냉재 탈락, 파손, 부식 상태						
2.운전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						
	-밸브 개폐 상태						
	-누수, 누유, 진공 상태						
	-소음, 진동 상태						
	-냉온수, 냉각수 입·출구 온도 상태						
	-배관 차압 상태						
	-배기가스 온도 상태						
	-연료 사용량, 공급 압력 상태						
	-전압 및 전류계 상태						
3.안전	-냉수동결 온도 상태						
	-오일온도 상태						
	-베어링 온도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냉각탑 유지관리 점검표

(3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밸브 개폐 장치 상태						
	-보온 및 흡음재 상태						
	-케이싱 손상, 변형 및 오염 상태						
	-누수 상태						
2.운전	-수위조절 상태						
	-이상 소음 및 진동 상태						
	-모터(감속기) 상태						
	-오일 누유 상태						
	-급수 및 드레인 배수 상태						
	-엘리미네이터 오염 상태						
	-백연저감장치 막힘 및 부식 오염 상태						
	-입 · 출구 온도 상태						
	-전압 및 전류 상태						
3.안전	-동결 방지장치 상태						
	-벨트 교체 시 안전교육						
	-냉각수 수질 상태						
	-인터록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교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축열조 유지관리 점검표

(4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온도, 압력계 상태							
	-보온재 탈락 및 파손 상태							
	-순환 펌프 외관 상태							
2.운전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							
	-브라인 입·출구 온도 및 압력 상태							
	-삼방밸브 작동 상태							
	-스트레이너 오염 상태							
	-축열조 용량 적정 상태							
	-상부 디퓨저 노즐 막힘 등 배관 상태							
	-분배기 판 노즐 막힘 및 오염 상태							
	-축열매체 외관 상태							
3.안전	-수위조절기 상태							
	-인터록 상태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보일러 유지관리 점검표

(5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외부 케이싱 손상 상태						
	-연도 및 연돌 부식 상태						
	-변형 및 파손 상태						
	-누수 및 누설 상태						
2.운전	-온도계, 압력계, 수위계 상태						
	-보급수 펌프 및 송풍기 상태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						
	-관수 농도 상태						
	-블로우다운 상태						
	-연료공급 압력 상태						
	-이상 소음 및 진동 상태						
	-증기 발생 및 공급 상태						
	-증기압력 상태						
	-연소 공기 및 외기온도 상태						
	-배기가스 온도 상태						
	-급수온도 및 유량 상태						
	3.안전	-고 · 저수위 상태					
-인터록 상태							
-안전밸브 누기 상태							
-방폭문 안전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열교환기 유지관리 점검표

(6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온도계, 압력계 상태						
	-보온재 탈락 및 파손 상태						
	-결로 상태						
	-누수 및 누설 상태						
2.운전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						
	-온도 조절밸브(2방밸브) 동작 상태						
	-이상 소음 및 진동 상태						
	-열교환 상태						
3.안전	-감압밸브 상태						
	-안전밸브 상태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팽창탱크 유지관리 점검표

(7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누수 및 부식 상태						
2.운전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						
	-급수 정상 보충 상태						
	-압력 상태						
3.안전	-공기배출기 작동 상태						
	-감압밸브 정상 작동 상태						
	-역류방지장치 작동 상태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펌프(냉·난방, 급수) 유지관리 점검표

(8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온도, 압력, 연성계(진공) 상태						
	-보온재 탈락 및 파손 등 상태						
	-누수 상태						
	-모터 전원 공급 및 연결 상태						
2.운전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						
	-스트레이너 오염 상태						
	-유면계 적정 및 오일씰 누유 상태						
	-펌프 회전 상태						
	-전류 상태						
	-매커니컬실 및 그랜드 패킹 누수 상태						
3.안전	-모터 및 펌프 샤프트 보호커버 상태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유지관리 점검표

(9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온도계, 압력계 상태						
	-집열판 등 오염 상태						
	-보온재 탈락 및 파손 상태						
	-순환 펌프 및 누수 상태						
2.운전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						
	-입 · 출구 압력, 유량, 온도 상태						
	-태양열 온수 적정온도 및 생산량 상태						
	-지열 열교환 상태						
3.안전	-안전밸브, 에어벤트, 팽창탱크, 급수 공급장치 상태						
	-개방형 지중열교환기 홀내부 오염 상태						
	-인터록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연료전지 유지관리 점검표

(10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연도 파손 및 누설상태						
	-가스배관 파손 및 누설 상태						
	-배관 파손 및 누수상태 (단열 상태 포함)						
	-밸브개폐 상태						
	-압력, 유량, 온도 상태						
	-케이스 오염 상태(누수, 부식 등)						
2.운전	-연료전지 연료공급 상태						
	-연료전지 통신 확인 (공유기 및 통신모듈 전원확인)						
	-연료전지 제어시스템 및 디스플레이 동작 상태 확인						
	-연료전지 전기 및 온수 생산량 상태						
	-연료전지 드레인 상태(원활한 배수)						
3.안전	-가스 감지기, CO 감지기 작동 상태						
	-누전 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 상태						
	-연료전지실 환기 상태						
	-연료전지실 유해물질 비치 여부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패키지 에어컨 유지관리 점검표

(11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실내기 및 실외기 외관 상태						
	-보온재 탈락 및 파손 상태						
2.운전	-드레인 판, 배관 이상 유무						
	-실내기 설정 온도 정상 작동 상태						
	-입 · 출구 온도 상태						
3.안전	-절연 및 결선상태						
	-실외기 청소 및 적재물 상태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점검표

(1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가습기 히터 등 외관 상태						
	-보냉재 탈락, 파손 상태						
	-외부 케이싱 부식 및 손상·변형 상태						
	-제어반 등 실내기 청결 상태						
2.운전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						
	-가습 히터작동 및 분사 상태						
	-증발기 및 드레인판 오염, 배수 상태						
	-온도센서 작동 상태						
	-전자 접촉기 접점 상태						
	-온도 및 압력계 상태						
	-전압 및 전류계 상태						
	-실내·실외기 소음 상태						
	-급수밸브 작동 상태						
	-압축기 고·저압 적정 압력유지 상태						
	-과열·과냉 운전 상태						
	-분배기 결상 및 드라이어 필터 상태						
3.안전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 압력 상태						
	-액면계 냉매 기포 상태						
	-기화기 급수관 누수 상태						
	-인터록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공기조화기 유지관리 점검표

(13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온도계, 압력계 상태						
	-밸브 개폐 상태						
	-보온재 탈락 및 파손 상태						
	-공기조화기 내 드레인판 오염 및 부식 상태						
	-누수 및 결로 상태						
2.운전	-가습밸브(전동) 작동 상태						
	-드레인 배관 막힘 상태						
	-계측기 및 스위치(온도, 습도 등) 정상 지시 상태						
	-필터 및 차압 적정 지시 상태						
	-에어벤트 작동 상태						
	-벨트장력 및 커버 상태						
	-필터 및 차압 적정 지시 상태						
	-열교환기(코일) 오염 상태						
	-냉온수 및 증기압력 상태						
	-열교환기(코일) 입·출구 온도차						
	-동파 방지용 히터 작동 상태						
	-댐퍼 개도 설정 등 작동 상태						
	-각종 부속기기(살균장치 등) 관련 제조사 관리방법에 따른 점검 상태						
3.안전	-공기조화기 내 점검용 전등 상태						
	-공기조화기 점검구 고정 상태						
	-벨트 교체 시 안전교육						
	-모터 과부하 및 과열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팬코일 유닛 유지관리 점검표

(14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케이싱의 변형 · 도장 및 오염 상태						
	-그릴 오염 상태						
2.운전	-송풍기 이상 소음 및 진동 상태						
	-드레인 배관 막힘 및 청결 상태						
	-공기빼기 밸브 정상작동 상태						
	-팬코일 입 · 출구 온도 상태						
3.안전	-누수 상태						
	-필터 및 코일 오염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환기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15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송풍기와 덕트 접속 상태						
	-외부 케이싱 손상, 변형 상태						
	-그릴 오염 상태						
2.운전	-벨트 장력 및 커버 상태						
	-이상 진동 상태						
	-흡입 댐퍼 작동 상태						
	-각종 부속기기(살균장치 등) 관련 제조사 관리방법에 따른 점검 상태						
	-베어링 급유(모터, 송풍기) 상태						
3.안전	-모터 과부하 및 과열 상태						
	-벨트 교체 시 안전교육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필터 유지관리 점검표

(16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필터 오염 상태						
	-필터(프리필터, 미디움필터, 헤파필터), 전기집진필터의 부착 상태						
2.운전	-적정 차압 상태						
	-필터 오염세척 및 교체 상태						
3.안전	-소음 상태						
	-필터 변형 및 파손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위생기구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17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오염, 부식, 파손, 균열 상태							
	-감지기, 기구류 부착 상태							
2.운전	-대·소변기, 세면기, 음수기, 소재싱크 등 동작 상태							
	-위생기구류 급·배수 상태							
3.안전	-누수, 역류, 취기, 막힘, 동결 상태							
	-고정 불량·처짐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급수·급탕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18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누수 상태						
	-급탕탱크 균열 상태						
2.운전	-온도계, 압력계, 계기류 동작 상태						
	-급수 공급 상태						
	-소음, 진동, 수격작용 상태						
	-급탕탱크 온도조절밸브 동작 상태						
	-탱크 내부 퇴적물 청소 상태						
	-급수·급탕 수질 상태						
	-급탕온도 적정유지 상태						
3.안전	-급탕탱크 청결 상태						
	-안전밸브 누수 상태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고·저수조 유지관리 점검표

(19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수면계, 통기관, 드레인관, 오버플로 우관 상태						
	-주위청결 상태						
	-균열, 누수, 부식, 결로, 탁도 상태						
	-물탱크 내부 연결장치 부식상태						
2.운전	-정수위밸브, 전자밸브 및 볼탭 정상 작동 상태						
	-급수 공급 상태						
	-정수(지하수)처리시설 시스템의 운전 상태						
	-수조 청결 상태						
3.안전	-안전사다리, 안전난간 등의 고정 상태						
	-맨홀 잠금장치 상태						
	-인터록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20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우수맨홀, 통기관, 드레인관, 트랩의 균열, 누수, 부식 오염 상태							
2.운전	-배수 상태							
	-배관 내부 및 탱크의 퇴적물 청소 상태							
	-오·배수 및 우수설비의 압력게이지 이상 유무							
3.안전	-오·배수 인터록 상태							
	-외부 우수맨홀 고정 상태							
	-누수, 역류, 취기, 막힘, 동결 상태							
	-고정 불량, 처짐 상태							
	-비상전원 연결상태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오수정화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21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누수, 취기, 통기 상태						
	-블로워(링, 루츠), 급·배기 송풍기, 스크린, 감속기, 유량조, 배관, 덕트, 각종 펌프 상태						
2.운전	-각 단계별 처리조 연동운전 상태						
	-약품공급 동작 상태						
	-각 단계별 처리조 내부의 퇴적물 적체 상태						
	-펌프, 센서류 동작 상태						
	-수질 상태						
3.안전	-안전사다리 및 안전난간 상태						
	-인터록 상태						
	-방류조 적정 유량 상태						
	-수중펌프 절연저항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물 재이용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2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누수, 취기, 역류, 동파 상태						
	-급·배기 송풍기, 스크린, 감속기, 유량조, 배관, 덕트, 중수도 블로워, 방류수 저장소(탱크) 상태						
2.운전	-우수처리시설, 중수처리시설 등 시스템 연동운전 상태						
	-펌프 운전 상태						
	-중수도 약품공급 동작 상태						
	-수조 내부의 퇴적물 적체 상태						
	-초기 우수 배제장치 상태						
3.안전	-안전사다리 및 안전난간 상태						
	-인터록 상태						
	-수중펌프 절연저항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배관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23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증기배관, 수배관, 냉매배관 등의 균열, 파손 상태						
	-밸브류 상태						
	-동관, 이중배관 절연 상태						
2.운전	-배관의 운전 에 따른 소음, 진동, 흔들림 상태						
	-배관 내부 스케일, 오물 적체 상태						
	-동시 사용 시 유량 공급 상태						
	-급수 · 급탕 감압밸브 상태						
3.안전	-배관 누수 상태						
	-통기관 누기 상태						
	-수격작용 상태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덕트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24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덕트의 오염, 손상, 파손, 부식 상태						
	-캔버스 이음부 및 덕트 상태						
	-챔버의 고정·지지 상태						
2.운전	-소음 진동 상태						
	-댐퍼 (VD, FVD, MVD), 급·배기 유닛 상태						
	-운전 시 루버 상태						
	-취출구 상태						
	-소음챔버 및 덕트 내·외부 등 소음재 부착 상태						
3.안전	-방화댐퍼 (FVD) 및 휴즈 이상 상태						
	-덕트 누기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보온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25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열선(파워킷, 엔드킷, 피복 등) 상태						
	-배관, 덕트, 밸브류, 열선 보온 상태						
	-탱크류, 장비류, 밸브류 보온 마감 상태						
	-계량기 및 배관 주변의 보온 상태						
2.운전	-결로(표면, 내부) 발생 부위 상태						
	-열선의 온도에 따른 경보 상태						
3.안전	-계량기 주변 등 동파방지 보온 상태						
	-발열선 차단기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26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보일러, 냉동기, 펌프류, 송풍기 등의 제어판넬 오염 상태						
2.운전	-상태감시, 자동운전 동작 상태						
	-밸브 및 댐퍼 작동 상태						
	-동작, 제어, 감시, 통신 상태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에너지 사용량 기록 상태						
3.안전	-신호 상태						
	-경보 상태						
	-인터록 상태						
작성 방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자동제어 중앙감시반 유지관리 점검표

(27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장비	기동정지	펌프류(냉난방 순환, 급수가압, 급탕) 원격제어					
		송풍기(기계실, 펌프실, 주차장, 전기실, 정화조 등)					
상태		장비류(냉동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					
계측기	출력	지역난방(1,2차 공급 및 환수온도)					
		보일러 공급 및 환수온도					
		헤더공급 및 환수온도					
		급탕 공급 및 환수온도					
		AHU 실내온도, 습도, CO ₂ , 필터 차압					
		AHU 급기온도, 습도					
		외기온도 및 습도					
	기록계	지역난방(1,2차 공급 및 환수온도)					
		보일러 공급 및 환수온도					
		헤더공급 및 환수온도					
		급탕 공급 및 환수온도					
		AHU 실내온도, 습도, CO ₂ , 필터차압					
		AHU 급기온도, 습도					
		외기온도 및 습도					
	액면표시	지하저수조					
		기름탱크					
경 고	고수위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집수정					
		정화조					
		기름탱크					
	저수위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기름탱크					
	저압력	팽창탱크					
	고 장	보일러, 냉동기 등					
	매 연	연도					
통 신		중간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방음·방진·내진 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28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일일	주간	월간	분기		
1.외관	-장비 정렬 상태						
	-장치 이탈 및 부식 상태						
2.운전	-장비별 운전소음 상태						
	-방음 상태						
	-냉동기, 냉온수 유닛, 냉각탑, 공기 조화기, 송풍기 등의 방진 상태						
	-덕트 및 배관류, 펌프 상태						
	-공기분배 계통 상태						
	-물분배 계통 상태						
3.안전	-부식, 내구연한 검토						

작 성 방 법

1. 점검내용에 따른 점검주기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표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비고에는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다.
3.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1 番)

점검자 : (서명)

작성 방법

210mm×297mm[백상지 80g/m²]

냉동기 성능점검표

(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기내압력 점검		
	-노후 및 부식 상태		
	-허용압력(압축기(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상태		
	-펌프(용액, 냉매, 진공) 상태		
	-연소장치 상태		
	-경보 상태		
	-안전장치(인터록) 상태		
	-과부하 차단 상태		
	-안전밸브 상태		
	-저·고수위 경보 상태		
	-배기가스온도		
	-냉동기에 연결된 헤더 상태		
	-에너지 사용량		
	-COP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전체 수량의 5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냉각탑 성능점검표

(3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냉각탑 수조 및 볼탭 상태	
	-노후 및 부식 상태	
	-살수장치 상태	
	-송풍기 날개 상태	
	-레지오넬라균(수질검사,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냉각수 유량 상태	
	-송풍기 회전수 상태	
	-충진물 상태	
	-부하전류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전체 수량의 5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축열조 성능점검표

(4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축열조 벽면의 균열 상태				
	-축열 · 방열 상태 및 데이터 점검				
	-분배기 판 노즐 상태				
	-브라인 농도 상태				
	-서포트 고정 상태				
	-에너지 사용 분석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보일러 성능점검표

(5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노후 및 부식 상태	
	-버너 연소 상태	
	-수위제어 및 급수 공급 상태	
	-화염 검출기 상태	
	-운전 압력 상태	
	-안전밸브 및 압력스위치 상태	
	-배기가스 성분 측정	
	-에너지 사용량 분석	
	-보일러에 연결된 헤더 상태	
	-감압밸브 작동 상태(소음, 진동)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전체 수량의 5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열교환기 성능점검표

(6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노후 및 부식 상태				
	-열교환 효율 점검				
	-응축수 배출 온도 상태(증기 열교환기에 한함)				
	-안전밸브 상태(증기 열교환기에 한함)				
	-증기트랩 상태(증기 열교환기에 한함)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전체 수량의 5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

팽창탱크 성능점검표

(7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균열 및 부식 상태				
	-블래더 작동 상태				
	-팽창탱크 배관 안전밸브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 성 방 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펌프(냉·난방, 급수) 성능점검표

(8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샤프트 및 패킹 마모 상태				
	-이상 소음 및 진동 상태				
	-베어링 및 모터 등 과열 상태				
	-베이스 앵커볼트 노후 및 풀림 상태				
	-이상 전류 차단 장치 동작 상태				
	-유량, 양정 및 동력 적정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 성 방 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전체 수량의 2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성능점검표

(9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노후, 부식 상태				
	-지열시스템 및 히트펌프 정상 작동 상태				
	-태양열 집열기, 축열조 온도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연료전지 성능점검표

(10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연료전지 발전부 온도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패키지 에어컨 성능점검표

(11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실내기 및 실외기 소음 상태				
	-실외기 고정 상태				
	-과열차단기 작동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전체 수량의 2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항온항습기 성능점검표

(1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실외기 부식 상태				
	-실내기 및 실외기 송풍기 이상 소음 · 진동 상태				
	-과열차단기 작동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 성 방 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전체 수량의 2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공기조화기 성능점검표

(13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외부 케이싱 부식, 손상, 변형 상태	
	-전동댐퍼 (OA, EA, RA) 작동 상태	
	-동파방지 장치 작동 상태	
	-공기조화기(송풍기) 풍량 상태	
	-폐열회수장치 작동 상태	
	-소음, 진동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전체 수량의 2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

팬코일 유닛 성능점검표

(14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노후 및 부식 상태				
	-전동밸브 정상 작동 상태				
	-조닝 적정 상태				
	-팬코일 풍량 조절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1개를 이상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환기설비 성능점검표

(15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노후 및 부식 상태	
	-모터 및 송풍기 베어링 이상 소음 상태	
	-볼륨댐퍼 개·폐쇄 상태	
	-급·배기 풍량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3. 전체 수량의 20% 이상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필터 성능점검표

(16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공기조화기 필터 차압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위생기구설비 성능점검표

(17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자동·수동 급수전 동작 상태				
	-동파 방지 조치 상태				
	-수전 사용에 따른 수격작용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급수·급탕설비 성능점검표

(18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펌프 운전(순환, 대류) 상태				
	-급탕 안전밸브 설정 상태				
	-급탕탱크 열교환기 증기트랩 동작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고·저수조 성능점검표

(19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파손, 변형, 누수, 결로 상태				
	-자동센서 동작 상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확인: 잔류염소, PH,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성능점검표

(20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파손, 변형, 악취 여부				
	-오·배수 및 우수 펌프 동작 상태				
	-경보장치 상태				
	-오·배수 및 우수 탱크 수위센서 정상 동작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오수정화설비 성능점검표

(21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컨트롤 패널, 수위제어, 계기류 상태				
	-처리시스템의 정상운전 상태				
	-경보장치 상태				
	-방류수 수질검사(하수도법 등 관련)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물 재이용설비 성능점검표

(22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노후 및 부식 상태				
	-자동센서 동작 상태				
	-경보장치(수위조절, 수위경보 등) 상태				
	-처리량 및 필터 상태				
	-중수도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확인)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배관설비 성능점검표

(23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신축이음 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 및 부식 상태				
	-배관의 고정, 지지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를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덕트설비 성능점검표

(24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장비 운전 시 댐퍼 (VD, MVD) 작동 상태				
	-유닛, 터미널 등의 소음 및 진동 및 풍량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를 표기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보온설비 성능점검표

(25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열선 운전 시 온도에 의한 제어 상태				
	-전열선 파손 및 절연 상태				
	-장비, 배관, 덕트 단열 상태				
	-보온재 표면온도(열누출)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자동제어설비 성능점검표

(26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기록장치 등 상태				
	-장비 및 시스템별 운전 적정 여부				
	-방화벽(최신 백신 업데이트 상태) 동작 상태				
	-경보관리, 데이터 조회, 수집 및 분석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방음·방진·내진 설비 성능점검표

(27 쪽)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위치 (No.)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항목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장치 변형 및 변위 상태				
	-장비류, 배관류, 덕트류 등 소음 상태				
부적합	<부적합사항>				
	<조치필요사항>				
현황사진					
비 고					

작성 방법

1.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의 적합여부를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2.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앞 쪽)

점검현장 개요	명 칭 (상 호)		선임자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주 소			
	용 도		연면적 (세대수)	m ² (세대)
	건물구조	지상 층, 지하 층	성능점검 기준일	
관리주체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점검대상 기계설비 종류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점검일수 :)		
점검자	상호(명칭)	대표자	등록번호	
성능점검업자				
점검 참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성명	등급구분	수첩발급번호	점검기간	

「기계설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2.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성능개선 계획 수립 및 에너지사용량 검토 결과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점검결과 내역서

현장 명칭		주 소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대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분	점검결과	부적합 내역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 내진 설비			

작성 방법

1. 점검결과에는 [적합 ○, 부적합 X, 해당없음 /]을 표기한다.
2. 부적합 내역에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부적합 내역을 작성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2. 2.] [고시 제2021 - 75호, 2021. 2. 2.,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044 - 201 - 458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의 결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 증명서 및 수첩발급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717호, 2020. 4. 17)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준을 갖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제2장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제4조(기계설비 관련 자격) 영 별표 2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계설비 관련 학과) 영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와 영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및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 교육과정 및 해당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인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제7조(실무경력의 인정기준) 영 별표 5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영 별표 5의2 제2호 나목에 따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
2.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1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
5.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7.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③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사유로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부도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포함한다)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5.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인터넷을 통한 신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1. 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2. 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변경신고
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제11조(자료의 보관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자료(제10조에 따른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경력관리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증명서 및 수첩 발급

제12조(증명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9항 및 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증명서의 발급)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보관 및 관리) ①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의 기본사항(등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자격, 학력 및 경력 이 변경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정정 신청 등) ① 학력·학과 및 등급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미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의 반납 등)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망 등의 이유로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장 경력관리위원회

제18조(경력관리위원회)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학과 인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5. 경력신고 및 관리 등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력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세부규정의 수립)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 - 75호, 2021. 2.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계설비 관련 자격(제4조 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목의 종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가. 배관
- 나. 용접
- 다. 특수용접
- 라. 에너지관리
- 마. 공조냉동기계
- 바. 판금제관
- 사. 기계가공조립
- 아. 전산응용기계제도
- 자. 생산자동화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다음 각 목의 민간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 나.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별표 2]

기계설비 관련 학과(제5조 관련)

구분	학과
영 별표 2 제2호 가목	기계관련학과, 설비관련학과, 기계설비관련학과, 건축설비관련학과, 냉동공조관련학과, 기계설계관련학과, 건설기계관련학과, 기계자동화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컴퓨터응용기계관련학과, 용접·접합과학공학과, 태양광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영 별표 2 제2호 나목	기계관련과, 기계설비관련과, 산업설비관련과, 금형관련과, 냉동공조관련과, 기계설계관련과, 에너지관련과, 건축관련과, 자동화설비관련과, 컴퓨터응용기계관련과, 폴리메카닉스관련과, 특수용접과, 정밀기계조립과, 메카트로닉스과

비고

1. 위 표의 학과 및 교육과정은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 또는 00관련과라 함은 00계열, 00(시스템)과, 00(시스템)학과, 00(시스템)공학과, 00(시스템)학부, 00(시스템)공학부, 00(시스템)전공, 00(시스템)공학전공 또는 00(시스템)과정 등을 말한다.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7조 관련)

구분	실무경력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총합 및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

	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별표 4]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8조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1. 산업기사	
2. 기능사	3년 이상
3.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5년 이상
4. 영 별표 2 제1호의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기술자 중 영 별표 5의2 비고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 별표 6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영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 위 표에서 “산업기사”, “기능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산업기사 :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나. 기능사 : 배관·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학과 인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상기인이 졸업(이수)한 학과(전공)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1. 학과(전공)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전공)의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경력

연 번	근무기간	담당업무[]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
	근무처(건축물명)	주소
	. . . ~ . . .	담당업무[]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
	. . . ~ . . .	담당업무[]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
	. . . ~ . . .	담당업무[]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를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근무 회사의 부도등으로 경력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른 서류
------	---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1.근무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 2.담당업무는 소속회사에서 담당한 기계설비 관련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 를 표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illegible]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illegible]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보유 증명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회사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급	용도			부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 목록 중 퇴직 또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회사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급	수첩발급번호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급	수첩발급번호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제출서류

1. 신분증 원본
2.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시 : 신청일 기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유의 사항

1. 신청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됩니다.
3.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 가능합니다.
4.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

[illegible]

297mm×210mm [백상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 신규 ☐ 변경 (☐ 기본사항, ☐ 자격, ☐ 학력, ☐ 경력) ☐ 재발급 (☐ 분실, ☐ 훼손)		
분실사유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을 것이며, 분실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우편 (주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첩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2.5cm×3cm) 각 1매 2. 수첩 원본(분실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신분증 원본
유의사항	

1. 분실사유는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llegible]

297mm×210mm [백상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호서식]

이의·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등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학력, []경력, []기타		
신청사유 및 정정 요청사항			
첨부서류	1. 2. 3. ※ 첨부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유의 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정결과에 따라 인적사항, 등급, 자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반납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발급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수첩 반납여부	[]에 []아니오		
반납사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원본 3.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성년후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보유 자격증의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한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대리인 신청 시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기계설비 관계 법령집

제 작 자 : 박용규

제작일자 : 2023. 1.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